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채용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4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

I 모집 분야

☐ 채용분야

구분	분야	인원	주요업무	근무지
정규직	상담원 (4급)	1명	- 노인학대 신고 접수 및 상담, 출동 - 노인학대예방교육 -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홍보 - 기타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인보호전문기관

☐ 임용조건

채용분야	근무시간	보수수준
상담원 (4급)	주40시간(1일 8시간, 주5일 근무)	道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 정규직 임용 시 수습기간 6개월 적용 후 근무평가를 통해 정규임용 확정

II 응시자격 (공고일 기준)

☐ 공통요건

구분	내용	비고
공통요건	-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60세 미만인 자 - 지역 우수인재 보호·육성을 위해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었던 기간(말소 및 거주 불명기간 제외)이 총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 성별 : 제한없음 - 임용예정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결격사유	- 제주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임용이 확정된 후라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서 규정한 횡령 및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기준

직위	자격기준
상담원	※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추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u>노인학대예방교육을 수료한 사람</u>*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추가요건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 ※ 실제 운전 가능자

* 노인학대예방교육은 입사 지원서 제출 전까지 수료하여야 하며, 수료증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 노인학대예방교육 온라인 교육 이수방법

온라인사이트	교육명	비고
서울특별시 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전국민편, 시설종사자편, 의료인편 中 택 1)	회원가입 및 수강 후 수료증 발급 가능
경기도지식(GSEEK) (https://www.gseek.kr)		
대전평생교육진흥원 (https://on.dile.or.kr)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버교육센터 (https://edu.kohi.or.kr/in)		

□ 가점 기준(우대사항)

구분	대상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면접만점 5% 또는 10%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한 자	면접만점 5%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①)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②) ◦ 청년 미취업자(만34세 이하)(③)	동점자 발생 시 ①→③ 순으로 우대

※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되며 접수시 해당내용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Ⅲ 채용 절차 및 일정

구분	일정	비고
공고	2025. 4. 2.(수) ~ 4. 14.(월)	
원서접수	2025. 4. 2.(수) ~ 4. 14.(월) 14:00까지	
서류전형	2025. 4. 15.(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 4. 16.(수)	
면접전형	2025. 4. 21.(월)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임용등록	2025. 4. 22.(화)	
임용	2025. 5월 중	

※ 상기 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 심사방법: 응시자격 기준 적격 여부 심사, 적격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합격배수: 응시자격 부적격, 제출서류 미비자를 제외한 전원 면접 응시기회 부여
- 통지방법: 제주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공시

□ 면접전형

- 면접 장소: 제주사회서비스원(제주시 애조로 1254)
- 면접 방법: 다대다 또는 다대일 정보가림 면접
- 합격 배수: 선발예정 인원 이내
- 면접 평정요소

공적책무성 등	이해력·지식수준	의사발표 정확성·논리성	인성 및 직업관	창의성 및 전문성	배점
20	20	20	20	20	100

- 통지방법: 제주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공시

□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및 통지

- 평정요소별 모든 시험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후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 동점자 처리: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사회적취업취약계층→면접 평정요소 고득점 순
- 예비합격자: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채용결격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최종예비합격자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 순번(선발인원의 3배수 이내)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음

□ 임 용

-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과 근로계약 체결

IV

지원서 접수

□ 제출서류

제출대상	제출서류	비고
필수 제출	○ 응시원서 [서식1] ○ 자기소개서 [서식2] ○ 직무수행계획서 [서식3]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동의서 [서식4] ○ 주민등록 초본 * 등본 미인정, 개명·병역사항 포함 ○ 노인학대예방교육 수료증 *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표기로 발급 제출 * 공고일 이후 발행,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제출
해당자 제출	○ 자격증 사본 ○ 재직/경력 증명서 * 제출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필수 첨부 ○ 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국가보훈처장 발행) ○ 장애인 증명서 ○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 증명서	(재직/경력 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 하고 발급 * 경력 기간은 입사지원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준 으로 하며 추가제출 서류 불인정

제출대상	제출서류	비고
최종 합격자	◦ 기본증명서 ◦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13자리 모두 표시) ◦ 일반채용신체검사서(영수증 및 통장사본) ◦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 6개월 이내 반명함 사진 1부(3*4cm) ◦ 기타 요청서류 등	2025년 건강검진 대상자의 경우 검사 결과로 채용신체 검사 대체 가능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외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여야 함

□ 접수 방법

○ 전자우편(jpass@jeju.pass.or.kr) 또는 방문접수

○ 접수처: 제주사회서비스원 2층(제주시 애조로 1254)

※ 평일(월~금 09:00~18:00)에만 가능(주말, 공휴일, 점심시간 12:00~13:00 접수불가)

※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에는 접수불가

IV

응시자 유의사항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 공고하므로 수시 확인 바랍니다.
- 정보가림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견될 경우 전형별 단계에서 임의로 가림 처리됩니다.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위조인 것으로 확인되거나, 고의로 누락·추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는 즉시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사회서비스원의 모든 시험에 응시를 제한합니다.
-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통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채용 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예외사유: 채용시험과 무관한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
- 채용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불합격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청구서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사지원서 제출 이후 추가제출 서류는 불인정 합니다.

○ 그 밖에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인사노무팀(070-4173-86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사회서비스원은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을 받지 않으며, 부정합격이 확인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